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자 판결 (2005가합2739)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강○○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며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

로그래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난 1992년 자신의 사연을 담은 “여자를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들이 모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한 모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739 손해배상(기)
 원 고 : 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선 룡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문순
 2.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대표이사 김지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 론 종 결 : 2005. 8. 18.
 판 결 선 고 : 2005. 9. 22.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0.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7. 6.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러한 사연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시집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문학수첩, 1994)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이하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은 원고의 삶을 소재로 하고 직접 원고를 출연시킨 “여자는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

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1996. 12. 14. 이를 방영하였다.

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문화방송 측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래보다 짧은 시간의 분량으로 편집하여 자사의 보험모집인들을 교육하거나 연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보험사들의 보험모집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CD-ROM을 휴대하고 있던 노트북을 통하여 상영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하여 자사의 보험상품 모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3. 12. 10.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PCA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630초 분량을 2,56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회사내부에서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은 1997. 10. 16.부터 2004. 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하여(이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라 한다) 개인 및 회사들에게 635개를 14,8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여 왔고, 그 중 보험사들에게는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피고들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다음으로 피고 프

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 더 나아가 PCA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 판매한 행위는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한 보험사들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여기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하는바,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한 자 등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

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원고와 피고 프로덕션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PCA 생명보험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PCA 생명보험 외의 보험사들이 구입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이다), 또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허락한 것은 피고 프로덕션이 아니라 피고 문화방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이 피고측 인터넷사이트인 imb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장기간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원교육용으로 사용을 허락한 부분,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보험사들에 직원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까지 해 준 부분 및 이를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로까지 만들어 배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들은 원고가 허락한 방송 외에 원고의 초상을 타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원고가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직원교육용으로 630초 분량의 콘텐츠사용허락을 한 사실, 피고 프로덕

선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보험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여 이를 보험사들에 공급한 사실,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판매, 유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초상은 어디까지나 1996. 12. 14. 당시의 방송과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방송, 예를 들어 통상적인 재방송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등의 사정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정도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한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를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책자로 제작한 부분도 또한 같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을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보험회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책자로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보험사에게 허락하거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피고 문화방송이나, 다수의 개인, 법인들, 특히 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피고 프로덕션이 위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원고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던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원고의 남편이 사망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족인 원고가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왜곡하여 보험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바,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하고,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것과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가 개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라 할 것이고,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3호증, 갑 5 내지 10호증, 갑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손해액에 관하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위, 태양, 정도와 그 공개범위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영업적 이익 등 이 사

건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은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2003. 12. 10.부터, 피고 프로덕션은 보험사에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2003. 4.(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중 2003. 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지막으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였다) 이후인 2003. 5.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 명 중
판사 이 흥 주
판사 이 수 민



판결 2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면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자 판결 (2004가합467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 판사)는 남○○(예명 : 유△△)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4. 6. 11.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작한 프로그램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

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6767 손해배상(기)

원 고 : 남 ○ ○(예명: 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우
담당변호사 이 정 호

Ⅲ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김 혜 라

변 론 종 결 : 2005. 9. 2.

판 결 선 고 : 2005. 10. 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피고 제작의 뉴스 프로그램 방영 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 보도를 방송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라는 예명으로 의류패션 등의 홍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몰에 원고의 이름을 딴 '유△△ 공화국'이라는 의류매장이 개설되면서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 '서울대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미국 유학 중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국내 독점수입계약 따낸 당찬 신세대 여성' '20대 여자 이사'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2004. 3. 1. KBS 2TV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300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하였다(위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박차고 1,300억원 투자유치 성공한 유△△'라는 자막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나.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왔는데, 2004. 6. 11.자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및 기존에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각종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에 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기획사인 '△△21'과의 내부 갈등(부당계약 문제, 계속되는 월급 연체 등)을 폭로하고, 한편 '△△21'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유△△ 공화국'이라는 프랜차이즈 의류판매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하여 원고의 이름을 신뢰하고 '유△△ 공화국'의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취재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은 '공인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건지 미처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라는 원고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래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신문, 잡지나 방송 등의 기사 및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원고가 오늘날의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특히 위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 방송 당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현재는 모두 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결국 신문과 방송이 사실 확인 없이 경쟁하며 서로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그 소속 기획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획사와 연예인 약정을 맺고 있으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부당계약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마.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낸 인터뷰 장면 중 원고 스스로 '이사'의 직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가,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가 문서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관계자들의 요구로 언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해외자본의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원고가 독점 수입했다는 미국의 패션브랜드는 이미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 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

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된 목적이 그 동안 언론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20대에 사업가로 성공한 신세대 스타라는 점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하는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주로 공적 존재인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 영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전체된 사실관계인 '원고의 해외자본 1300억 원 유치여부' '원고의 이사로서의 역할' 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표현의 정도에 있어서도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 2, 3, 6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속 회사와의 내부갈등 문제를 폭로하고 더 이상 '유△△ 공화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보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하여 원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김□□, 원고가 소속된 기획사인 '△△21'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취재해 나감에 따라 원고가 '△△21'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고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통역 등 실무적인 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위 '△△21'과 소위 '연예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등 등 종래 언론에 의해 알려져 있던 '신세대 경영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실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종전까지 언론사들에 의하여 왜곡 전달된 정보가 있다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방송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나 '△△21'과 그간의 사업내용의 실상(특히 해외자본 1300억원 유치 부분)과 왜곡정보 형성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 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인터뷰 방향을 유도하고 취재를 집중하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의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성상 취재원의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대로만 방송이 기획될 수는 없고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서 이를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방송의 말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21' 간의 부당계약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21' 관계자의 반박 발언 역시 방송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

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원고와 기획사 간의 부당계약 문제, 원고가 '△△21'과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점 등)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작·방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상의 신용, 성명권, 초상권,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펴건대, 위 가,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취재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감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